

#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2021.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차 례

I. 제 출 배 경 .....	1
II. 주 요 내 용 .....	4
III. 개 정 의 견 .....	9

## 공 직 선 거 법

### I.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1.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 및 방법 확대 / 9
2. 후보자의 법정 선거운동방법 제한 완화 / 11
3. 단체·언론기관의 대담·토론회 개최 확대 / 13
4. 정당·후보자 등의 행위 제한기간 축소 / 14

### II. 선거여론조사의 현실 적합성 제고

1. 청소년 대상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 허용 / 15
2. 공표·보도 금지 선거여론조사 정비 / 16
3.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확대 / 18
4. 선거여론조사범죄의 재정신청 대상 포함 / 20
5. 선거여론조사의 정확도 및 응답률 제고 / 21

### Ⅲ.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보장

1. 감염병 등 긴급사태 시 거소투표신고 확대 및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 22
2. 재외선거에 제한적 우편투표 도입 및 투표시간 조정 / 23
3. 거소·선상투표 신고방법 확대 및 구제절차 신설 / 25
4. 투표보조인으로 활동보조인 추가 / 26

### Ⅳ. 선거의 공정성·형평성 확보

1.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 27
2. 정보통신망 위법게시물 게시자에 대한 삭제요청 근거 마련 / 28
3. 당선무효 선거보전금 환수 실효성 확보 / 29
4. 임기개시 후 당선인의 재산신고내역 추가 확인 / 30
5. 청년·장애인후보자의 기탁금 하향 및 반환요건 완화 / 31
6. 국고보조금 지급 정당에 대한 선거비용 감액 보전 / 32

### Ⅴ. 그 밖의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

1.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장장치 소음규제 / 33
2. 미성년자 선거참여 확대 및 학습권 보호 / 35
3. 사전투표용지 QR코드 및 인영 인쇄날인 규정 정비 / 39
4. 선거의 연기 관련 규정의 보완 정비 / 40
5. 그 밖의 선거 규정의 명확한 정비 / 42

## 정당·정치자금법

### I.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와 내실화

1. 구·시·군당 설치 허용 / 46
2. 정당가입 가능연령 16세 하향 / 48
3. 정당 등록취소 요건 정비 / 49
4. 정책 중심 정당정치 구현 / 50
5. 정당법 위반행위 조사권 및 자수자 특례 / 52

### II.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1. 후원금 모금방법 확대 / 53
2. 보조금 배분방식 합리적 개선 / 56
3.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배분 / 60
4.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사무소 등 설치지역 제한 완화 / 61

### III.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1.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상시 인터넷 공개 / 62
2.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정치자금 조건부 사용 허용 / 64
3.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자수자 특례 / 66
4. 중앙당창준위 소멸 시 후원회 자동해산 / 67



# I. 제 출 배 경

- 우리나라는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어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고, 이러한 성과를 얻기까지 1994년 제정된 이래 그동안 수차례 개정되어온 「공직선거법」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선거문화 개선 및 국민의 정치의식 향상에도 여전히 선거운동에 대한 세세한 규제방법이 유지되고 있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과 개선요구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임.
-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개선요구에 부응하여, 공정경쟁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와 보다 엄정한 선거비용 규제를 전제로, 가까운 장래에는 선거운동의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져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 이번 개정의견은 장래 선거운동의 완전 자유화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시설물·인쇄물·소품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확대와 함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 확대, 정당·후보자의 법정선거운동과 각종 행위에 대한 제한 완화, 단체·언론기관의 대담·토론회 확대 등을 제안하고자 함.
- 또한, 국민이 생활 주변에서 정당을 통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하되, 과거의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시·군당 운영의 민주성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 IT기술의 발달로 활발해지고 있는 온라인 후원서비스와 인터넷 광고를 정치자금 모금방법으로 허용하여 정치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지출을 상시 공개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 그밖에도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감염병 등 긴급사태 시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미비, 선거에

있어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선거여론조사의 현실 적합성 제고,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국고보조금 배분 등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우리 위원회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확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 표시등)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것임.

## Ⅱ. 주 요 내 용

### ① 공직선거법

첫째,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확대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중 신문광고 등 법정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90일을 초과하는 정당·후보자의 각종 행위 제한기간을 90일로 축소하고, 단체·언론기관은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할 수 있도록 함.

둘째, 선거여론조사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 대상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를 허용하고, 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공표를 금지하되 당내경선 대체 여론조사와 후보단일화 여론조사의 결과공표를 허용하는 한편,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상번호 요청·제공기한을 단축하고 제공대상에 후보자도 포함하며,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여론조사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셋째,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감염병 등 긴급사태 시 이동제한자의 거소투표와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외선거에서 주재국의 긴급사태 발생 시 제한적 우편투표와 투표시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거소·선상투표에서 인터넷 이용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허용하고 명부 누락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가족이 아닌 활동보조인 1명도 투표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

넷째, 공정한 선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선거보도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정보통신망 위법게시물의 게시자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보전금 미반환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임기개시 후 당선인의 재산신고내역을 추가 확인함으로써 후보자등록 시 정확한 재산신고를 유도함.

다섯째, 선거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년·장애인후보자의 기탁금을 하향하고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며,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은 정당에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으로 해당 선거에 지출한 금액만큼 선거비용을 감액 보전하도록 함.

여섯째,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장장치의 출력과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미성년자의 선거참여와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사전)투·개표참관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등교일의 학교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사립학교 교원도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사전투표용지에 QR 코드 표시와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영을 인쇄날인으로 같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그 밖에 선거의 연기, 대통령선거관리경비 편성·배정시기, 비례대표의원선거 대담·토론회 참석대상, 보궐선거 각종 행위제한 적용시기,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사유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선거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함.

## ② 정당·정치자금법

첫째,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가입 가능연령을 16세로 하향하고, 정당의 지역조직으로서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하면서 구·시·군당 운영의 민주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시·군당의 대표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 시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고, 구·시·군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도록 함.

둘째, 정당 등록취소 요건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정당의 정책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연구소의 수익사업 허용을 법에 명확히 하며, 정책토론회 초청대상 정당이 다수일 때 2회로 나누어 개최하도록 하는 한편, 당대표경선등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행위 조사권을 부여하고 자수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면제하도록 함.

셋째, 원활한 정치자금 조달을 위하여 소셜미디어 후원서비스를 통한 후원금 모금과 인터넷광고를 허용하고, 다른 지역구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사무소나 연락소를 이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대한 보조금 우선 배분 폐지,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추천 비율에 따른 차등 배분,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등 국고보조금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

넷째,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고, 정치활동을 계속 하려는 사람이 선거 종료 후 일정한 요건 하에 반환기탁금과 보전비용을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 그 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되도록 함.

# Ⅲ. 개 정 의 건

## 공 직 선 거 법

### I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1.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 및 방법 확대 (§ 60의2, 60의3)

##### 현 행

-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표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구 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대통령선거	선거일전 240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전 120일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설치·게시, 명함 배부 또는 지지호소,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개정의견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선거별로 다음과 같이 앞당김.

구 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현 행	개정의견
대통령선거	선거일전 240일	선거일전 <u>1년</u>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전 120일	선거일전 <u>240일</u>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선거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	선거일전 <u>120일</u>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등록신청 가능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확대함.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어깨띠·표지 착용, 예비후보자홍보물 직접 배부\* 허용

\* 단, 거리 살포·비치는 금지

▶ 예비후보자홍보물 면수·수량 제한 폐지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정견 등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1회에 한하여 출마선언식 개최 허용

※ 출마선언식 개최 시 옥내 확성장치 사용 제한적 허용

## 제안이유

예비후보자등록시기를 현행보다 이른 시기로 조정하고 선거운동방법을 확대함으로써 현역 정치인과 정치신인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대 보장하려는 것임.

## 2. 후보자의 법정 선거운동방법 제한 완화 (§ 61, 69, 70, 71, 79)

### 현 행

-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에 한하여 첨부할 수 있음.
- 후보자는 공개장소에서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개정 의견

- 후보자의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 및 선거운동기구 홍보물 첨부 등에 대한 제한을 다음과 같이 완화함.

선거운동방법	현 행(제한사항)	개정 의견
선거운동기구설치(§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후보자의 사진에 한하여 첨부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물 첨부 제한 폐지</li> </ul>
신문광고(§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체·횡수 제한</li> <li>■ 일부선거에서만 허용</li> <li>■ 일간신문 광고만 가능</li> <li>■ 인증서 미첨부 광고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횡수 제한 폐지</li> <li>■ 모든 선거에서 허용</li> <li>■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광고 허용</li> <li>※ 인증서 첨부는 현행유지</li> </ul>
방송광고·연설(§70,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체·횡수시간 제한</li> <li>■ 일부선거에서만 허용</li> <li>■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송광고·연설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횡수시간 제한 폐지</li> <li>■ 모든 선거에서 허용</li> <li>■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송광고·연설 허용</li> <li>※ 대선 관련 방송연설은 현행 규정 유지</li> </ul>
공개장소 연설대담(§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체 제한</li> <li>■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 수량 제한</li> <li>■ 녹화기 규격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화기 규격 제한 폐지</li> <li>※ 그 외 제한사항은 현행 유지</li> </ul>

- 선거운동의 주체, 제작업체의 명칭·연락처 등을 선거운동을 위한 매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제안이유

- 공공의 안전 침해, 도시의 미관 훼손, 국민불편 초래 등을 제외하고는 법정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려는 것임.
- 다만,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대신 선거운동 매체에 ‘선거운동정보 표시’ 의무를 부여하여 행위 및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선거비용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3. 단체·언론기관의 대담·토론회 개최 확대 (§ 81, 82)

#### 현행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선거운동 표방 노동조합·단체 제외)와 언론기관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음.
- 다만, 언론기관은 대통령선거는 선거일전 1년,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선거일전 60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음.

#### 개정 의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선거운동 표방 노동조합·단체 제외)와 언론기관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 “개정 의견(1-1)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조정을 전제로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대선은 개최기간을 현행(선거일전 1년) 유지

#### 제안 이유

단체와 언론기관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정책·공약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4. 정당·후보자 등의 행위 제한기간 축소 [§ 53, 86, 89, 112 등]

### 현 행

정당·후보자의 각종 행위에 대한 제한시기가 선거일전 180일, 120일, 90일 등으로 각각 상이함.

### 개정 의견

90일을 초과하는 정당·후보자의 각종 행위에 대한 제한기간을 선거일전 90일로 축소함.

제한 내용	현 행	개정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 등 제한(§86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전 <u>90일</u> 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참석 제한(§86⑥)		
정당·후보자 관련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89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직 기한(§53⑤)	선거일전 120일까지	선거일전 <u>90일</u> 까지
기부행위 대상 확대 및 명의 추정 불가(§112②2라)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전 <u>90일</u> 부터
정당의 창당대회 등의 제한기간(§140①)		

### 제안 이유

「공직선거법」상 각종 행위 제한기간이 복잡하여 후보자 등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장기간의 행위제한은 정당·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키므로 선거일전 180일 또는 12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선거일전 90일로 단축·통일하여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대 보장하려는 것임.

## II 선거여론조사의 현실 적합성 제고

### 1. 청소년 대상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 허용 [§ 8의8⑧]

#### 현 행

시민단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투표(실제 정당·후보자에 대한 모의투표를 말함. 이하 같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므로 사전신고, 선거일전 60일 이후 투표용지 유사 모형 사용 금지, 표본의 대표성 확보 등 제108조를 준수하여야 함.

#### 개정 의견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술·교육 목적의 모의투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제외함.

※ 다만, 결과 공표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에 해야 하며, 교육청·교원 등이 주체가 되어 실시(후원 포함)하는 학술·교육 목적의 모의투표도 관련 조항(§9, §85, §86)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 제안 이유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는 공직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목적의 여론조사로 보아 선거여론조사에서 제외하여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를 제한하여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2. 공표·보도 금지 선거여론조사 정비

### 가. 정책연구소 실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 108⑫]

#### 현 행

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나,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는 가능함.

#### 개정 의견

정책연구소가 실시(의뢰)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함.

#### 제안 이유

정당과 정책연구소 간 밀접한 관련성과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나. 당내경선 및 후보단일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허용 [§ 108]

### 현 행

당내경선 대체 여론조사 또는 후보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표본의 대표성 등을 준수해야 하고,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음.

### 개정 의견

○ 당내경선 대체 여론조사 또는 후보단일화 여론조사\*의 경우 표본의 대표성 준수, 공표·보도 금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등의 적용(§108⑤~⑧, ⑫)을 배제함.

\* 단일화를 빙자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일화에 참여하는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후보단일화 여론조사에 한하여 결과 공표·보도 허용

○ 다만, 거짓응답 지시·권유·유도행위와 착신전환 등 행위 금지는 현행 규정(§108⑪)을 유지함.

### 제안 이유

당내경선은 정당 고유의 업무로 볼 수 있고, 후보단일화는 정당·후보자 간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정치적 행위인바, 이를 위한 여론조사는 다른 선거여론조사와는 구별되는 특수성이 존재함에도 선거여론조사의 제규정이 적용되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3.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확대 [§ 57의8, 108의2]

#### 현 행

- 정당은 당내경선 선거일전 23일 또는 여론수렴기간개시일전 10일,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 개시일전 10일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해야 함.

#### 개정 의견

- (가상번호 요청 및 제공기한 단축) 휴대전화 가상번호 요청 기한과 이동통신사업자의 제공기한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구 분	요청기한		제공기한	
	현 행	개정 의견	현 행	개정 의견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57의8①1)	당내경선 선거일전 23일까지	당내경선 선거일전 <u>10일</u> 까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요청받은 날부터 <u>5일</u> 이내
정당의 여론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57의8①2)	여론수렴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여론수렴기간개시일전 <u>7일</u> 까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108의2)	여론조사개시일전 10일까지	여론조사개시일전 <u>7일</u> 까지		

- (가상번호 제공 대상 확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전략 수립, 정책·공약 개발 등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횟수는 4회를 넘을 수 없도록 함.

※ 이 경우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제안이유

- 여론의 추이가 시시각각 변동되는 상황에서 가상번호 제공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조사에 적합한 표본을 적시에 확보하는 등 보다 정확한 여론조사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 후보자(입후보예정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게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정책·공약을 개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4. 선거여론조사범죄의 재정신청 대상 포함 [§ 273]

### 현 행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는 재정신청 대상이 아님.

### 개정 의견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범죄들을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함.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할 선거여론조사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96①)</li> </ul>	벌칙 §252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108⑤)</li> <li>•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된 질문 사용(§108⑤1)</li> <li>• 응답강요·유도 등 피조사자 의사 왜곡(§108⑤2)</li> <li>•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시 성별·연령 등 거짓 응답 지시·권유·유도(§108⑪1)</li> <li>•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통한 동일인의 두 차례 이상 응답 및 지시·권유·유도(§108⑪2)</li> <li>• 정당·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108⑫)</li> </ul>	벌칙 §256①5

### 제안 이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대응 수단을 마련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5. 선거여론조사의 정확도 및 응답률 제고 [§ 108]

### 현 행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경우에 한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 전화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개정 의견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거짓응답 지시·권유·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도 다수인으로 확대함.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전화요금 할인 외에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후보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제안 이유

- 선거여론조사 표본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범위를 확대하여 선거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현실적으로 전화요금 할인혜택 제공이 어려우므로 인센티브 다양화를 통하여 선거여론조사 응답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 Ⅲ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보장

#### 1. 감염병 등 긴급사태 시 거소투표신고 확대 및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 38, 148]

##### 현 행

- 일정한 요건(§38④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고, 감염이 의심되어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은 격리조치 해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음.
-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개정 의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을 거소투표신고 대상자에 포함함.
- 감염병,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 제안 이유

감염병 유행 등 긴급사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도 거소투표신고 대상자에 포함하고,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2. 재외선거에 제한적 우편투표 도입 및 투표시간 조정 [§ 218의16 · 17 · 18 · 19 · 29]

### 현 행

- 재외선거의 투표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하여야 함.
- 재외선거의 투표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추가 설치 재외투표소의 경우에는 해당 재외위원회가 예상 투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개정 의견

- (제한적 우편투표 도입) 주재국의 감염병 유행,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중앙위원회가 해당 주재국의 우편환경 등을 고려하여 우편투표 실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 공관 현지실정과 우편투표실시 가능여부에 대한 공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공관의 투표소 투표사무 중지 및 우편투표 실시 결정
- (재외투표소 투표시간 조정) 주재국의 감염병 유행,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 투표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외위원회가 중앙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제안이유

- 긴급사태로 재외투표소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한적 우편투표를 도입하여 재외선거인의 안전과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아울러 재외투표소 운영은 가능하나, 통행금지 등으로 법정 투표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재외투표소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코로나19 사태로 55개국(91개 공관)에서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되고, 쿠웨이트, 과테말라, 이집트 등의 국가에서는 통행금지(16시~04시 등) 시행

### 3. 거소·선상투표 신고방법 확대 및 구제절차 신설 (§ 38, 40)

#### 현행

- 거소·선상투표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함.
-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구제절차 규정 없음.

#### 개정 의견

- 관할 구·시·군의 장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대해서도 열람·이의신청, 불복신청, 명부누락자 등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2일, 명부누락자 등재신청기간은 1일로 함.

#### 제안 이유

- 인터넷 이용 거소·선상투표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서면 신고에 따른 문제점(주소 등 오기, 우편신고 시 기한 내 미도착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다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필요
-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구제절차를 신설하여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 명부 작성의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4. 투표보조인으로 활동보조인 추가 [§ 157]

### 현 행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 개정 의견

투표보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가족, 활동보조인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으로 함.

### 제안 이유

-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의 활동을 평소 보조하여 온 사람은 선거인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1인이 보조하더라도 선거인의 의사가 담보될 수 있을 것이므로 1인의 활동보조인만을 동반한 경우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 선거인에게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도록 강제하거나 투표사무원 중에서 투표보조인을 선정하는 것은, 선거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제3자에게 정치적 의사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IV 선거의 공정성·형평성 확보

### 1.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 8의5, 8의6]

#### 현행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에 대해 심의할 수 있으나, 파급력이 큰 다른 채널\*에 게재된 경우 심의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방송법상 채널 정의)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 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의 단위

#### 개정 의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 인터넷홈페이지 외에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관리·운영하는 유튜브 등 보도채널에 게재된 선거보도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제안 이유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의 발달로 인터넷언론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연관 보도채널을 인터넷선거보도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확대하여 불공정 선거 보도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 2. 정보통신망 위법게시물 게시자에 대한 삭제요청 근거 마련 [§ 82의4]

### 현 행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위법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나, 위법행위 당사자인 게시자에 대해서는 삭제요청을 할 수 없음.

### 개정 의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자에 위법게시물 게시자도 포함함.

### 제안 이유

정보통신망에서 위법게시물을 게시한 사람에게도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외법의 적용을 받거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매체에 게재된 게시물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함.

### 3. 당선무효 선거보전금 환수 실효성 확보 (§ 265의2)

**현행** : 규정 없음.

#### 개정 의견

- 반환기한까지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의 인적사항·반환사유·미반환금액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함.
  - ※ 추후 반환자, 소멸시효 완성으로 반환채무가 소멸된 자는 제외
- 미반환사유 최초 발생 시 명단을 정당에 통보하고, 이후 자진 납부, 반환완료로 변동되는 정보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미반환 사실이 있는 자가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후보자정보 공개자료에 해당선거와 미반환 금액을 기재하도록 함.
  - ※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반환사실’도 기재하도록 함.
- 지방선거에서 징수위탁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범죄(§263~§265)로 기소되거나 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함.

#### 제안 이유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공직적합성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과 함께 선거보전금 환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당선무효 선거범죄로 기소 또는 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에는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여 선거보전금 미반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 4. 임기개시 후 당선인의 재산신고내역 추가 확인 (§ 49)

**현행** : 규정 없음.

### 개정 의견

- 당선인이 임기개시 후 해당 기관에 최초 등록하는 재산내역 (기존 재산등록의무자는 전년도 12. 31. 기준 재산변동신고내역)과 후보자등록 당시 재산신고내역을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비교·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고의로 은닉·누락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함.
- 후보자등록 시 재산신고는 현행으로 유지하되, 제출한 재산신고서류는 당선인에 한하여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공개함.

### 제안 이유

선거인이 후보자의 도덕성 등 자질을 비교·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인 재산신고내역에 대해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선거기간 중 모든 후보자의 재산신고내역을 검증할 시간도 부족하므로 당선인에 한하여 사후 추가 확인하는 제도를 두어 후보자등록 시 정확한 재산신고를 유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5. 청년·장애인후보자의 기탁금 하향 및 반환요건 완화 [§ 56, 57]

### 현행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 없이 선거별로 기탁금을 정하고 있고, 당선, 사망 또는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반환함.

### 개정 의견

○ 청년\*·장애인\*\*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금액의 50%로 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제외).

\*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함.

○ 청년·장애인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요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함.

1)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당선 또는 사망한 경우 포함)에는 기탁금 전액

2)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제안 이유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장애인후보자의 기탁금액을 하향하고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여 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 6. 국고보조금 지급 정당에 대한 선거비용 감액 보전 (§ 122의2)

### 현 행

- 「정치자금법」 제27조제1항의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에 매년 경상보조금을 지급하고, 임기만료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함.
-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일 후 보전함.

### 개정 의견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으로 해당 선거에 지출한 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전함.

※ 국고보조금 중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여성·장애인 후보자 추천 장려라는 목적과 여성·장애인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지출 용도가 정해져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 제안 이유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과 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의 이중 국고지원 문제를 선거비용 감액 보전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V 그 밖의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

### 1.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규제 [§ 79, 102]

#### 현행

-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확성장치 및 녹음·녹화기 사용에 대한 별도의 소음제한 규정 없음.
- 다만, 차량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녹음기·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음.

#### 개정 의견

- (정격출력 제한) 정격출력<sup>1)</sup>(차량용 : 3KW, 휴대용 : 30W) 이내의 확성장치<sup>2)</sup>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시간 제한) 확성장치 사용시간을 다음과 같이 축소함.

구분	사용가능 시간	
	현행	개정 의견
차량용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	오전 7시 ~ 오후 10시 (오전 7시 ~ 오후 9시)	오전 <u>8시</u> ~ 오후 <u>8시</u>
휴대용 확성장치	오전 6시 ~ 오후 11시	오전 <u>7시</u> ~ 오후 <u>9시</u>

1) 소리가 변형되지 않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력으로서 8Ω 스피커에 연결한 상태에서 1KHz 사인파 신호입력하여 앰프의 전대역(20~20,000Hz)에서 5분이상 시간동안 왜곡이 1.0% 이하를 만족하는 출력 <美가전협회, CEA>

2) 음성을 증폭기(amplifier)에 의해서 확대하여 스피커를 통해서 확성하는 장치 <전자용어사전, 1995>

## 제안이유

- 헌법재판소가 주거지역과 같은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가 필요한 지역에서 출·퇴근 또는 등·하교 전후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또는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8헌마730)
-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차량용 확성장치로 정격출력 2KW~5KW가 전체의 73.8%를 차지하고, 실제 대담·연설에 3KW~5KW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3KW로 제시(확성장치 소요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어 필요 이상 성능의 앰프를 사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음).
- 휴대용 확성장치(30W)는 사용목적에 고려하여 20M, 70dB를 기준으로 하여 정격출력 도출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소음기준으로 주거지역·학교·병원은 55~80dB, 그 밖의 지역은 65~95dB로 설정

## 2. 미성년자 선거참여 확대 및 학습권 보호

### 가. [사전]투·개표참관 가능연령 16세 하향 (§ 60, 161, 162, 181)

#### 현 행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사전)투표·개표참관을 할 수 없음.

#### 개정 의견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사전)투표·개표참관을 허용함.

#### 제안 이유

선거권 연령 하향에 맞춰 미래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 제고와 선거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거권이 없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사전)투표·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선거운동 등 제한 [§ 58의2, 60의3, 80, 81, 106]

### 현행

- 투표참여 권유행위,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공개장소 연설·대담 금지장소에 초·중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후보자의 명함이나 선거공약서 배부,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장소에 제한이 없음.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개정 의견

- 투표참여 권유행위(현수막 등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공개장소 연설·대담\*,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가 금지되는 장소에 '등교일의 학교'를 포함함.
  - \* 등교일의 학교시설 경계에서 100m 이내 금지
- 호별방문 제한 외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등교일의 학교'를 제외하여 교내시설 전체를 선거홍보물이나 후보자의 명함 배부 등이 금지되는 장소로 명확하게 규정함.

## 제안이유

-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면서 학생 유권자에 대한 학교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선거운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교사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학교시설 자체가 아닌 ‘등교일의 학교’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실현하는 한편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 다.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등 제한 [§ 85, 86]

### 현 행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개정 의견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②) 및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①)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함.

### 제안 이유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학생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성이 크고, 초·중등교원은 공무원 신분에 관계없이 교육 대상, 업무 성격, 근무환경 등이 동일하므로 이들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3. 사전투표용지 QR코드 및 인영 인쇄날인 규정 정비 (§ 151, 158)

#### 현 행

-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함.
-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규칙 §84③).

#### 개정 의견

- 바코드의 정의를 “막대·점자·모자이크 등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로 함.
-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할 수 있음을 법에 명시함.

#### 제안 이유

-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수112 판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이 위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사전투표관리관 인영 인쇄날인은 선거인의 투표 대기시간 단축 등 투표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제3항은 법에 규정된 날인 방법을 구체화하는 해석적·보충적 규정이므로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유권자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4. 선거의 연기 관련 규정의 보완 정비 (§ 36, 196)

### 현 행

-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함.
- 선거일만을 다시 정하여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는 경우 선거인명부, 후보자등록 등 선거관리에 대한 적용 기준이 없음.

### 개정 의견

- 대통령\* 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연기된 선거의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는 때에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는지 아니면 선거일만을 다시 정하여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는지를 함께 결정·공고하도록 함.  
\*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함.
- 이미 진행된 절차에 이어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선거의 연기 결정 시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당초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사용하고, 후보자도 당초 선거의 후보자로 함.  
※ 그 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제안이유

연기된 선거의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하는 절차사무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연기된 선거의 선거일 결정권자가 선거일을 정할 때에 선거절차를 이어 계속하는지도 함께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5. 그 밖의 선거 규정의 명확한 정비

### 가. 대통령선거관리경비 편성·배정시기 조정 [§ 277]

#### 현행

-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경비는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되,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 경비는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함.
- 해당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계도·홍보 및 단속사무 경비는 선거일전 240일)까지 배정하여야 함.

#### 개정 의견

- 대통령선거일이 12월에서 3월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에 집행이 필요한 선거관리 준비경비의 경우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 선거일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고(계도·홍보 및 단속사무 경비는 현행 유지),
- 그 외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일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함.

#### 제안 이유

대통령선거일이 12월에서 3월 초로 변경되면서 예산의 배정시기가 편성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준비 경비의 편성·배정시기를 조정함.

※ 현행법에 따른 제20대 대통령선거관리경비 예산 편성·배정 시기

- 예산 편성 : 2022년 (선거기간개시일 기준 : '22. 2. 15.)
- 예산 배정 : 2021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 기준 : '21. 12. 17.)

## 나. 비례대표의원선거 대담·토론회 참석대상 명확화 [§ 82의2]

### 현 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이하 “비례대표의원선거”라 함)에 있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대상을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고 있으나, 참석대상은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 의견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참석대상을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함.

### 제안 이유

대담·토론회 초청대상과 참석대상을 일치시켜 입법 불비사항을 보완함.

## 다. 보궐선거등에서의 행위제한 적용시기 명확화 [§ 86, 89, 90, 93]

### 현 행

임기만료 선거에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하는 제86조제5항·제6항, 제89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3조제1항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 의견

선거일전 18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한하여 제86조제5항·제6항, 제89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3조제1항의 적용시기를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명확히 함.

현 행	개정 의견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선거일전 18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 제안 이유

선거일전 180일 전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제한기간이 임기만료 선거의 180일보다 늘어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것임.

## 라.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사유 명확화 [§ 57]

### 현 행

예비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반환함.

### 개정의견

기탁금 반환사유를 '예비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한 선거구에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로 명확히 함.

### 제안이유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요건인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불명확하여 예비후보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기탁금 반환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정당·정치자금법

### I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와 내실화

#### 1. 구·시·군당 설치 허용 (§ 3, 17, 18, 37)

##### 현행

-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함.
-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 협의회를 둘 수 있음.

##### 개정 의견

[전제] 당대표의 사당화 방지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구·시·군당을 도입함.

##### 가.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한 구·시·군당 설치 허용

-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자치구·시·군에 소재하는 구·시·군당으로 구성하며, 임의기구로 시·도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분산하여 자치구·시·군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구·시·군당을 가지도록 함.

\* 2020년 12월 현재 자치구·시·군 총수는 226개임.

## 나. 당대표에 의한 사당화(私黨化) 방지

- 구·시·군당의 대표자는 해당 당부의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함.
- 구·시·군당의 대표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해당 선거의 선거일전 1년(재·보궐선거는 사유발생 후 10일)까지 사퇴하도록 함.

## 다. 고비용 해소 및 회계 투명성 확보

- 자치구·시·군의회에 의석을 가진 구·시·군당은 해당 지방 의회의 청사에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함.
- 중앙당은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구·시·군당에 지급하도록 하고, 구·시·군당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비율만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후원인이 중앙당 또는 구·시·군당을 지정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구·시·군당에 국고보조금, 당비 및 후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함.

### 제안이유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정치공동체 층위에 대응하여 정당의 지방조직을 허용함으로써 정당의 조직형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생활 주변에서 정당을 통해 정치적 의사 형성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 정당가입 가능연령 16세 하향 (§ 13, 22, 23)

### 현행

-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음.
-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음.

### 개정 의견

- 16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다만,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가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제안 이유

- 정당의 구성원 자격은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정당가입 가능연령을 하향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 보장하려는 것임.
- 다만, 무분별한 불법 당원모집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정당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함.

### 3. 정당 등록취소 요건 정비 (§ 44)

#### 현 행

정당이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4. 1. 2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됨.

#### 개정 의견

정당이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0.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제안 이유

현행 규정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12헌마43)에 따라 그 등록취소 요건을 결정 취지에 맞게 현행보다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진정성 있게 참여하는 정당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4. 정책 중심 정당정치 구현

### 가. 정책연구소의 수익사업 허용 명확화 (§ 38)

#### 현 행

-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지급하여야 함(정치자금법 §28).

#### 개정 의견

정책연구소가 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자체 발행하는 연구출판물의 유상판매, 외부 연구용역 수주 등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제안 이유

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책연구소의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앙당이 지급하는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직된 재정여건을 해소하고 정책개발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 나. 정당 정책토론회의 효율적 개최·운영 (§ 39)

### 현 행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함.

### 개정 의견

「정당법」 제39조의 정책토론회 초청대상 정당의 수가 5개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2회로 나누어 각각 개최함.

### 제안 이유

「정당법」 제39조 정책토론회 초청대상 정당의 수가 많은 경우에 2회로 나누어 개최·운영함으로써 정당 간 정책에 대한 상호 주장 및 반론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정당의 활발한 정책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정당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5. 정당법 위반행위 조사권 및 자수자 특례 [신설]

**현행** : 규정 없음.

### 개정 의견

-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49),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50), 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52)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규정에 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의 대표자·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포함)의 선출을 위한 선거를 말함.
- 당대표경선등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 제안 이유

- 「정당법」 벌칙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선거범죄 또는 정치자금범죄 조사권에 준하는 조사권이 필요함.
- 또한, 당대표경선등에서의 매수행위와 같은 중대범죄는 당사자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범죄발견이 어려우므로 자수자 특례 규정을 두어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의 자수를 유도하려는 것임.

## II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 1. 후원금 모금방법 확대

#### 가. 소셜미디어 후원서비스를 통한 후원금 모금 허용 (§ 10, 14)

##### 현 행

소셜미디어의 시청자 후원서비스<sup>1)</sup>(이하 '후원서비스'라 함)를 통한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없음.

##### 개정 의견

- 후원회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함)가 개인방송을 직접 운영하는 미디어콘텐츠창작자<sup>2)</sup>로서 소셜미디어 후원서비스를 통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
- 소셜미디어 업체는 약관에 규정된 수수료를 제외한 후원금과 후원인의 인적사항을 지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지정권자는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원금과 후원인의 인적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여야 함.
- 후원회는 지정권자로부터 전달받은 후원금에 대하여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하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함.

1) 시청자가 개인방송제작자에게 생방송 및 재방송 중 자발적으로 유료아이템을 후원하는 서비스

2)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며, BJ, 미디어콘텐츠크리에이터, 유튜브크리에이터, 콘텐츠창작자 등을 말함.

## 제안이유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상의 후원서비스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후원금 모금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정치자금을 원활하고 투명하게 조달하게 하는 한편, 유권자의 정치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 나. 후원금 모금 인터넷광고 허용 (§ 15)

### 현행

- 후원회는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음.
- 후원회는 분기별 4회 이내에서 신문은 길이 17센티미터 너비 18.5센티미터 이내, 정기간행물은 2면 이내로 후원금 모금 광고를 할 수 있음.

### 개정 의견

- 후원회가 인터넷언론사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후원금 모금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이용한 후원금 모금 광고의 횟수 및 규격 제한 규정을 폐지함.

### 제안 이유

후원회의 인터넷언론사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후원금 모금 광고를 허용하고, 신문·정기간행물을 이용한 광고횟수·규격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정치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 보조금 배분방식 합리적 개선

### 가.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 27)

#### 현행

-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100분의 50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함(§27①).
-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으로서 5석 이상 의석 정당에는 100분의 5씩,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의석 정당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정당에는 100분의 2씩을 배분·지급함(§27②).
- 위와 같이 배분·지급한 후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국회 의석 정당에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함(§27③).

\* 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

#### 개정의견

-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100분의 50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하는 것을 폐지함(§27① 삭제).
- 5석 이상 의석 정당에는 100분의 5씩,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의석 정당에는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배분·지급하되 (§27② 유지), 그 잔여분은 국회 의석 정당에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함(§27③ 수정).

## 제안이유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유리한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을 정당의 의석수·득표율이라는 유권자의 지지의사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정당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비교]

조항	현행	개정 의견
제27조 제1항	교섭단체 구성 정당 → 100분의 50을 균등하게 배분	<u>폐지</u>
제27조 제2항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아닌 5석 이상 정당 → 100분의 5씩	<u>5석 이상 정당</u> → 100분의 5씩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정당 중 1.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 2% 이상 정당 2.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이 2% 미만이나 의석 정당 중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득표수 비율 0.5% 이상 정당 3.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득표수 비율 2% 이상 정당 → 100분의 2씩	현행과 동일
제27조 제3항	의석을 가진 정당 → 잔여분의 100분의 50 × $\frac{\text{국회 의석수}}{\text{비율}}$ → 잔여분의 100분의 50 × $\frac{\text{국회의원선거 득표수}}{\text{비율}}$	의석을 가진 정당 → 잔여분 × $\frac{\text{국회의원선거 득표수}}{\text{비율}}$

## 나.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 26)

### 현 행

임기만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만을 대상으로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함.

### 개정 의견

-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에 해당 정당만을 대상으로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지급하는 것을 폐지함.
- 전국지역구 총수 대비 여성후보자추천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조금 총액을 차등하여 배분·지급함.

전국지역구 총수 대비 여성후보자추천 비율	배분 대상 보조금 총액	배분방식 (배분 대상 보조금 총액별)
100분의 30 이상	보조금의 50%	1. 배분되는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	보조금의 30%	2. 100분의 40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함)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	보조금의 20%	3. 그 잔여분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

- 다만, 여성후보자추천 비율이 낮은 구간에 있는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추천 비율이 높은 구간에 있는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제안이유

여성추천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분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여성후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 3.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배분 [신설]

**현 행** : 규정 없음.

#### 개정 의견

-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34세 이하의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배분·지급하도록 함.
- 청년추천보조금의 계상단가는 50원으로 함.
- 청년추천보조금은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배분방식에 준하여 배분·지급하되, 청년후보자추천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 정당으로 구분함.

#### 제안 이유

공직선거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배분·지급함으로써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년 세대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 4.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사무소 등 설치지역 제한 완화 [§ 9]

### 현 행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그 지역구에 사무소 또는 연락소 각 1개소를 둘 수 있고, 사무소를 둔 지역구 안에는 연락소를 둘 수 없음.

### 개정 의견

후원회를 둔 지역구국회의원이 다른 지역구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그 국회의원후원회사무소 또는 연락소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는 변경 없음.

### 제안 이유

지역구국회의원이 다른 지역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해당 지역으로 후원회사무소등을 이전·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Ⅲ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 1.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상시 인터넷 공개 (§ 42)

##### 현행

정치자금 회계는 다음연도 2월 15일 또는 신분 상실 후 일정기간 이내에 보고하고, 열람(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및 사본교부를 허용하되,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명세서에 한하여 열람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함.

##### 개정 의견

-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및 그 후원회, 시·도당,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는 매월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하여 다음 달의 5일까지 상세내역(지출증빙자료 제외)을 선거관리위원회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되, 인터넷 공개를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 중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 사본, 예금통장 사본, 심사의결서 또는 감사의견서 사본을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파일로 제출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보고 내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개시스템을 통해 상시 인터넷에 공개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지출증빙자료 및 필요 시 소명내역 포함)을 검색·분류·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

### 제안이유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인터넷을 통하여 외부에 상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허위·누락 보고를 예방하고, 국민,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이 상호 검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2.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정치자금 조건부 사용 허용 (§ 58)

### 현 행

- 후보자가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여 반환·보전받은 경우 그 반환·보전비용에서 자신의 재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모두 공제한 잔액을 정당추천 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무소속후보자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여야 함.
- 국회의원선거 당선인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보전받은 후 그 반환·보전비용을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개정의견

- 국회의원선거·지방의원선거 당선자와 계속해서 정치활동을 하려는 공직선거의 낙선자는 반환·보전받은 비용에서 자신의 재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모두 공제한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 중 정당의 지원금은 소속 정당에 인계하고, 후원회의 후원금은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반환·보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보전비용 사용신청」(자신 명의의 예금계좌 포함)을 하고, 반환·보전받은 비용을 모두 지출한 때에는 「반환·보전비용 지출내역」을 보고하도록 함.

- 입후보준비, 정책·공약개발, 지역현안 의견수렴 등의 정치활동에만 정치자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용도위반 시 처벌 조항을 둬.

### 제안이유

-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선거의 당선자와 낙선자도 일상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후원금을 선거 후에도 계속해서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 간 형평을 기하고, 정치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그 활동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직무상의 중립의무가 있고, 교육감 및 교육감이 되려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주체인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3헌바169)을 고려하여 대통령선거·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당선자, 교육감선거의 당선자와 낙선자는 기존대로 소속 정당 또는 공익법인 등에 인계하도록 함.

### 3.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자수자 특례 [신설]

**현 행** : 규정 없음.

#### 개정 의견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 제안 이유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수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것임.

## 4. 중앙당창준위 소멸 시 후원회 자동해산 (§ 19)

### 현행

-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다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 경선의 종료로 그 신분이 상실되어 해산되는 경우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대통령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신분상실로 해산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음.

### 개정 의견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후원회의 해산신고는 할 필요가 없도록 함.

### 제안 이유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 후원회는 자동해산하고, 지정권자의 신분상실로 해산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후원회 해산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해산신고의 예외로 규정하여 정치자금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